

#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1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8. 24 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항공운송사업 진흥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국제항공노선 신규 취항을 유도하고
- 나.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하여 이용 시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재정지원의 대상에 대하여 정함(안 제3조).
- 나.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금의 반환에 대하여 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항공운송사업 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협의 후 결정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
  - (1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  - (2) 입법예고 : 2007. 7. 20.~ 8. 9. / 접수의견 없음

##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항공운송사업 진흥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항공사업자”라 함은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항공 운송사업자와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자를 말한다. 이 경우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.

**제3조(지원 대상)** ①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
2.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, 충청남도 및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4조(지원 신청)**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금의 반환)** 시장은 지원대상 항공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주의의무)**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준용)**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 관계법령발췌

## □ 항공운송사업진흥법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개정 1991.12.14>

1. "항공운송사업"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.

제3조 (항공운송사업의 조성) ①정부는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(이하 "항공사업자"라 한다)가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2.1.19>

1.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
2. 항공기의 조종사, 정비사 및 무선기술기사의 양성
3. 전쟁·내란·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

②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사업자(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. 제8조에서 같다)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02.1.19>

제8조 (목적외 사용금지 및 감독) ①이 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는 그 자금을 당해 교부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.

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.

<개정 1997.12.13, 2002.1.19>

## □ 항공법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1997.12.13, 1999.2.5, 2001.9.12, 2002.2.4, 2003.12.30, 2005.11.8>

26. "항공운송사업"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.
27. "정기항공운송사업"이라 함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 사업을 말한다.

## □ 항공법 시행규칙

제15조 (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구분) 법 제2조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지점간운송사업 :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운송사업
2. 관광비행사업 :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함이 없이 정하여진 노선에 따라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운송사업
3. 전세운송사업 :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운송사업



나.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금의 반환에 대하여 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
### Ⅲ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예순)

-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인근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는 대전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신규 취항하는 국제노선 개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,
-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1997. 4. 28일 개항되어 현재 상해, 홍콩 등 국제노선과 제주도 등 국내노선을 취항하고 있으나, 적정이익이 보장되지 않아 항공사업자들이 취항을 기피하고 있어 국제노선 확충을 위해 신규 국제노선 개발 항공사업자에게 안정화 기간동안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,

- 조례제명을 「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」으로 정하고, 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에서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하였음.
-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을 경우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, 재정지원금에 대한 주의의무를 정하였음.

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,

- 본 조례안은 청주국제공항에 다양한 국제노선 취항으로, 이를 이용하는 대전 시민들의 공항이용 편의를 제공하고,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로 충청권 경제공동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

청주국제공항에 신규 취항하는 국제노선 개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

- 2006년도 한국공항공사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대전·충남거주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62%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재정지원에 대한 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,
- 지원 대상 항공사업자가 정기·부정기 항공 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있고,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와 지원기간, 지원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,
-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충청남도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여부와 타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IV. 질의·답변요지 : 생 략

V. 토 론 요 지 : 생 략

VI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